

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#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·운영과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수수료 및 우송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, 구성 및 운영 (안 제3조 ~ 제5조)
-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6조)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절차·방법 등(안 제7조 및 제9조)

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의 청구·납부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부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본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.
- 안 제3조(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)부터 안 제5조(협의회의 운영)까지는 ‘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’의 설치 근거와 기능 및 심의 사항, 위원의 자격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협의회 의원은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, 위원장의 ‘개인정보 보호책임자’ 당연직, 정기회의는 매년 1회, 회의 방식은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 원칙과 예외적 서면회의 규정함.
- 안 제6조(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)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는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, 업무 내용 근거와 업무수행의 불이익 금지와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에 관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8조(개인정보파일 관리)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 등록 및 파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 및 삭제 요청하는 등 관리 세부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9조(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)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
- 안 제10조(개인정보 파기)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 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파기해야 하며,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경우 소각, 파쇄 등 완전파기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
- 안 제11조(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)는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에 따른 수수료 등의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2조(이의신청)는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3조(보험 · 공제 등의 가입)는 개인정보 취급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사로 인한 피해 발생과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근거 사항을 규정함.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·운영과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수수료 및 우송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급변하는 시대와 4차산업의 현실화로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제도와 법규가 필요하므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됨.
- 개인정보를 업무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,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대응조치를 규정하는 등 입법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유출 시 정부주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 우려를 인지하여 도지사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와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시 손해배상 대비를 위해 예산 범위 내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업무수행에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됨.

- 완성도 높은 제도와 법규의 시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제도운영과 법규의 적용이므로, 개인정보를 업무로 다루는 부서와 개인정보 취급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·감독이 필요함.
-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상기 적시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. 끝.